

서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 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

서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
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
다.

제3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내지제4호를

각각 제1호내지제3호로 하며, 제5호 및 제6호
를 삭제하고, 제7호를 제4호로 하며, 제4호
다음에 제5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5. 결핵대책관리요원
6. 보건진료원
7. 사회복지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군가정복지계장</u> 2. <u>(생략)</u> 3. <u>(생략)</u> 4. <u>(생략)</u> 5. <u>약사감시원</u> 6. <u>나판리요원</u> 7. <u>(생략)</u> 	<p>제3조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삭제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(현행 제2호와 같음)</u> 2. <u>(현행 제3호와 같음)</u> 3. <u>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삭제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삭제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<u>(현행 제7호와 같음)</u> 5. <u>결핵대책관리요원</u> 6. <u>보건진료원</u> 7. <u>사회복지사</u>
<p><u>(신설)</u>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<u>(신설)</u></p>	